



제 391 회 국 회 (정 기 회)
제 2 차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태권도단체의 무주 이전시 비용지원〉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0952호)

2021.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태권도단체의 무주 이전시 비용지원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1. 6. 22.

다. 회 부 일 : 2021. 6.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연구·전시·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태권도공원이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및 태권도의 보급·연구·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각종 태권도단체가 태권도공원의 근거리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가 그 사무소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단체의 무주군으로의 이전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태권도단체의 무주 이전 시 비용지원(안 제9조제3항 신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태권도단체가 그 사무소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①·② (생략) <u><신설></u>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가 그 사무소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전라북도 무주군에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써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연구·전시·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태권도공원(법 제9조)과 태권도공원의 조성·운영,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태권도진흥재단을 두고 있음(법 제20조).

태권도공원은 세계태권도인의 교육·수련·연구의 중심이자 태권도 정신과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정부 주도하에 2014년 개원하였음. 이후 가족휴양시설, 레포츠시설, 건강체험시설 등 민간투자 유치에 위

한 민자지구 사업이 1,066억원의 규모로 계획 중이었으나, 수도권과의 접근성 문제, 인프라 구축 부족 등으로 투자유치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은 태권도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 각종 태권도단체가 태권도공원의 근거리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무주로의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가 그 사무소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이전 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태권도법」에 따르면, 태권도단체란 ‘태권도의 발전·교육·국제 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로(법 제2조제3호) 세계태권도연맹(서울), 태권도진흥재단(무주), 국기원(서울)이 해당되나, 서울에 주소지를 둔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만이 개정안에 따른 지원 가능한 대상이 될 것임.

참고로, 세계태권도연맹은 고양시로 본부 이전을 계획 중인바, '21.2월 고양시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실시 중이며,¹⁾ 정부는 '25년부터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1)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관련 그간의 추진 경과

- (2020.10.7.) 사업타당성 기본 연구용역 완료(고양시)
- (2020.11.2.)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이전 업무협약 체결(WT-고양시)
- (2021.1.)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이전 관련 조직 출범(고양시)
- (2021.2.~11.)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고양시)
-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3.1월 설계용역 착수, '25.1월 착공, '26.12 완공예정임.

사무동 건립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다만, 현행 「태권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제8조), 조성된 태권도공원의 시설물 일부를 태권도단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으므로(제17조제3항), 개정안과 같은 별도 규정 없이도 태권도단체에 대한 비용지원은 법적으로 가능할 것임.

국기원은 동 개정안에 대해 태권도단체의 사무소뿐만 아니라 지점을 무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최근 3개년도 태권도단체 예산현황****□ 태권도진흥재단**

2019년	○ 태권도 진흥	3,610 백만원
	○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21,147 백만원
	○ 태권도 개도국 용품 지원	147 백만원
	합계	24,904 백만원
2020년	○ 태권도 진흥	5,710 백만원
	○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23,443 백만원
	○ 태권도 개도국 용품 지원	147 백만원
	합계	29,300 백만원
2021년	○ 태권도 진흥	7,553 백만원
	○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20,589 백만원
	○ 태권도 개도국 용품 지원	297 백만원
	합계	28,439 백만원

* 기타공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 국기원

2019년	○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태권도 시범단 운영 및 해외공연 등	8,190 백만원
2020년	○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태권도 시범단 운영 및 해외공연 등	10,121 백만원
2021년	○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태권도 시범단 운영 및 해외공연 등	10,397 백만원

□ 세계태권도연맹

2019년	○ 태권도 개도국 초청연수	300 백만원
2020년	○ 태권도 개도국 초청연수	300 백만원
2021년	○ 태권도 개도국 초청연수,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종목 지원	500 백만원